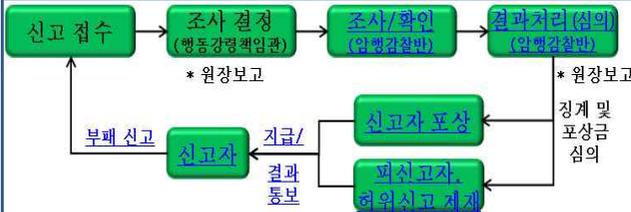


● 신고 및 확인절차



※ 허위신고 제재

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나 동일 내용의 반복 신고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같이 신고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밀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제재 가능

공익신고자 보호법

●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?

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

●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목적

-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고 활성화
- 공익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패 발생의 예방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

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.

-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
-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!

제재유형	위반유형
징계처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·보도 • 불이익 조치를 한 자
벌칙	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·보도 •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
	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• 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
	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•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

DTaQ 신문고 소개
(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포함)



국방기술품질원

감사실

DTaQ 신문고

-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비위사항과 업무 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신고하는 체계
- 부패신고시스템, 전자민원창구, e-클린신고시스템, 청탁등록시스템으로 구성
- 인터넷, 국방망 기관 홈페이지에 탑재

DTaQ 신문고 (인터넷)



(<http://www.dtaq.re.kr>)

- 부패신고시스템
금품, 향응수수 등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체계로 외부인이 인터넷의 기품원 홈페이지에서 신고

- 전자민원창구(인터넷)
외부인의 민원사항을 신고하는 체계로 외부인이 인터넷의 기품원 홈페이지에서 신고

DTaQ 신문고 (국방망)



- 부패신고시스템
내부 직원의 금품, 향응수수 등의 공직자행동 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체계로 직원이 국방망 다모아 홈페이지에서 신고
- e-클린신고시스템
부득이하게 수수한 금품, 향응수수 등의 내용을 내부에서 신고하는 체계로 직원자신이 국방망 기품원 홈페이지에서 신고
- 청탁등록시스템
업무와 관련한 청탁자와 청탁사항을 등록하는 체계로 청탁을 받은 직원이 국방망 다모아홈페이지에서 등록

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

원 위상 및 청렴도에 손상을 미치는 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기품원 직원이 내부 직원의 금품, 향응수수 및 횡령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

제도 시행방안

- 시행 시기
2012년 4월 초부터 시행
(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)
- 신고 및 포상대상
기품원 직원이 신고한 내부직원의 금품, 향응수수 및 횡령 행위 (점차적 확대 예정)
- 신고 방법
 - 유선으로 감사실장에게 신고
 - 인터넷-DTaQ신문고, 다모아시스템-DTaQ신문고를 통해 신고
(임직원행동강령의 별지 제 8호 “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” 작성)
- 신고자 포상
감사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사안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